

보도 해명자료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이상한 "한·호 FTA" - 호주 50억불 이익
희희낙락 ('13.12.8(일), 한겨레 인터넷판)

1. 기사내용

- ☐ 호주 정부는 한·호주 FTA 체결로 2015년부터 15년동안 50억불의 추가이익이 발생 등 대규모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
 -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이 75% 증가, 전체 농축산물 수출을 5% 늘리는 효과
 - 수출의 3/4를 차지하는 석탄, 철광석, 천연가스, 금 등 광물도 10년안에 관세철폐
 - 제조업 분야 수출도 53% 증가, 최고 13% 수준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비타민 등 제약품과 자동차 부품, 엔진 등이 유망 품목
- ☐ 그러나,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분석 효과를 내놓지 않고 있음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'13.12월 한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어,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·호 FTA "경제적 영향평가" 작업을 '13.12.9주부터 대외 경제정책연구원(KIEP) 등 관련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실시 예정임
 - 통상절차법 제11조(영향평가)에 따르면 "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"에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

- 협상결과를 반영한 분야별/산업별 경제적 영향분석 작업을 통해, 발효 이전단계에서 농축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내실있는 보완대책 마련에 활용 예정

- ☐ 정부는 한·호 FTA 협상 개시 이전단계에서 한·호 FTA의 "경제적 타당성 검토" 작업을 기실시하였는 바,

- 한·호 FTA 체결시, 제조업분야(자동차, 금속, 석유화학 등)에서는 혜택이, 농·축산물 분야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, 이를 한·호 FTA 협상 과정에 반영한 바 있음

※ 통상절차법 제9조 : "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"

- ☐ 호주측의 한·호 FTA 경제적 효과 발표 내용은 '13.12월 실질 타결된 한·호 FTA 협상 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분석결과가 아닌 것으로 이해됨

- 또한 '13.12월 한·호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발표 이후, 호주 국내적으로 한·호 FTA 체결로 상당수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 장성길(02-2110-4792)